

정 관

(한국스카이다이빙협회)

제정	1987년 12월 01일	대한낙하산협회
개정	1989년 01월 01일	대한낙하산협회
	1994년 01월 1일	한국스카이다이빙협회
	1997년 1월 12일	한국스카이다이빙협회
	1998년 1월 1일	한국스카이다이빙협회
	2000년 10월 1일	한국스카이다이빙협회
	2001년 12월 15일	한국스카이다이빙협회
	2002년 12월 8일	한국스카이다이빙협회
	2007년 1월 13일	한국스카이다이빙협회
	2010년 4월 19일	한국스카이다이빙협회
	2011년 12월 11일	한국스카이다이빙협회
	2015년 01월 10일	한국스카이다이빙협회
	2019년 01월 07일	한국스카이다이빙협회

제1장 일반

1. 명칭

본회는 국토해양부 가맹단체인 사단법인 대한민국항공회의 가맹단체로서 한국스카이다이빙협회라 칭하고, 영문으로는 Korea Parachute Association이라고 표기한다.

2. 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수도권에 두고 필요에 따라 지부를 둘 수 있다.

3. 목적

본회는 비영리 단체로서 국민에게 스카이다이빙을 보급하여 항공정신을 배양하고, 세계 항공연맹 (Federation Aeronautique

Internationale,FAI)의 국제낙하산 분과위원회 (International Parachute Commission)와 제반 스카이다이빙 활동에 대한 발전을 도모하는 동시에 회원 상호 간의 친목을 기하여 국가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4. 활동범위

본회는 국내에서 실시하는 항공스포츠로써의 모든 스카이다이빙 활동을 대표하며, 국제 관계에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활동한다.

5. 사업

본회는 3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 5.1 협회 회원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제반 업무
- 5.2 스카이다이빙의 안전 기술 및 장비 발전을 위한 전반적인 업무
- 5.3 스카이다이빙에 관련된 각종 자격증의 관리업무
- 5.4 국내 및 국제 스카이다이빙 대회 개최와 국가대표 선수 구성 및 파견 업무
- 5.5 대 국민 스카이다이빙 홍보를 위한 제반 사업
- 5.6 스카이다이빙 교육기관의 인, 허가 및 업무지도
- 5.7 협회 회지 및 기타 간행물 발간
- 5.8 기타 스카이다이빙에 관련된 필요한 업무

제 2 장 회원

6. 회원의 자격

본 회의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입회되고, 본 회의 제반 규정을 준수하는 동호인을 회원으로하며, 일반회원, 평생회원, 명예회원으로 구분한다.

6.1 일반회원: 스카이다이빙 활동에 관심이 있고, 본 회의 목적에 동의하는 사람으로서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본회에 가입한 사람을 일반회원으로 한다

6.2 평생회원: 일반회원 중 10년간의 회비를 일시에 납부한 사람을 평생회원으로 한다.

6.3 명예회원: 스카이다이빙 발전 및 진흥에 뚜렷한 공로가 있는 사람으로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회장이 명예회원으로 위촉한다.

7. 회원의 권리와 의무

7.1 권리

본회의 제반 규정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7.1.1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제반 행사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7.1.2 본회의 회원은 총회에서 의사 진행 발언을 할 수 있으며, 투표로서 의사를 표현할 수 있다.

7.2 의무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본회의 정관을 준수하며 다음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7.2.1 본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입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7.2.2 본회의 회원은 년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8. 회원 자격의 상실과 회복 및 탈퇴

8.1 자격의상실

본회의 회원이 다음 각 항에 해당될 때에는 그 자격이 상실되어 회원의 모든 권리가 박탈되며, 8.1.2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 자격을 상실한다.

8.1.1 본 회의 회원으로서 년 회비를 납부하지 않을 시

8.1.2 본회의 사업 및 운영을 방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할 시

8.2 자격의 회복

회원으로서 자격이 상실된 자는 년 회비를 납부함으로써 그 자격을 회복할 수 있으며, 8.1.2의 사항으로 자격이 상실된 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 자격을 회복한다

8.3 탈퇴

회원은 본인이 사무국에 본회의 탈퇴를 통보함으로써 임의로 탈퇴할 수 있으며, 탈퇴와 동시에 협회에 대한 모든 권리를 상실하고 의무를 면한다.

제 3 장 총 회

9. 총회의 구성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된다.

10. 구분 및 소집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성되며, 정기총회는 년 12월 2번째 토요일에 실시 한다. 임시총회는 회장 또는 회원의 10분지1 이상의 요청 시 회의 개최 2주 전까지 회장이 소집 공고하여 실시한다.

11. 의장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되며, 회장 유고 시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12. 성립 및 의결

총회는 재적인원 5분지 1 이상의 참석으로 성립되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의장은 가부동수일 때 표결권을 가진다. 단, 당년에 활동하지 않은 평생회원은 재적인원에 포함하지 않는다.

13. 총회의안

총회는 미리 통지한 의안 외에 출석회원 3분지 1 이상이 찬성하는 안건은 당일 긴급 의안으로 제의할 수 있다.

14. 부의사항

총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부의 한다.

14.1 전년도 사업 및 결산에 관한 사항

14.2 신년도 사업 및 예산 편성에 관한 사항

14.3 자산 설정 및 처분에 관한 사항

14.4 정관 개정 혹은 수정에 관한 사항

14.5 회장, 감사의 선출

14.6 기타 사항

제 4 장 이사회

15. 이사회

15.1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감사, 이사, 심판위원장, 자문위원장, 교육기관장으로 구성되며, 이사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

15.1.1 감사, 심판위원장, 자문위원장, 교육기관장은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나 표결권은 없으며, 재적인원에 포함되지 않는다.

15.2 이사회는 정기이사회,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정기이사회는 년 4회 각 분기 초에, 임시 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의 소집 요구 또는 재적 이사의 3분의 1 이상의 요청으로 회장이 소집한다.

15.3 이사회는 표결권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표결권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5.4 이사회에 부의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5.4.1 본 회의 사업계획 및 실천에 관한 승인

15.4.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15.4.3 특별회계에 관한 사항

15.4.4 국제대회에 참가할 선수 및 대표단의 확정

15.4.5 신규 교육기관의 승인

15.4.6 관리규정, 강하자 지침서, 낙하산 정비사 관리규정 등 기타 필요한 세칙의 제정, 수정 및 폐기에 관한 사항

15.4.7 회원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

15.4.8 기타 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및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5 장 임원과 간부회원의 자격

16. 임원과 간부

16.1 본 회의 회장, 부회장, 고문, 감사, 이사, 심판위원장과 자문위원장을 임원이라 하며, 임원을 보좌하는 회원을 간부라 한다.

16.2 임원과 간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재임할 수 있다. 보궐 선출된 임원과 간부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16.3 회장 및 두 명의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 16.4 부회장은 회장이 임명하며, 필요 시에 복수의 부회장을 선임할 수 있다.
- 16.5 이사는 사무이사, 훈련안전이사 등 업무를 담당하는 당연직 이사와 회장이 부여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일반이사 및 심판위원장, 자문위원장으로 구성하며, 회장이 임명한다.
- 16.6 협회 운영에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인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회장이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 16.7 임기가 끝난 전임회장은 명예회장으로 당연 추대되며 종신제이다
- 16.8 지부회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은 자는 회장의 승인을 받아 지부장으로 임명된다. 단, 지부회가 처음 설립되는 곳은 초대 지부장을 회장이 임명할 수 있다. 또한 지부장은 협회의 다른 직책을 겸임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16.9 본 회의 간부는 담당이사의 추천으로 회장의 승인을 받은 자들로 구성한다.
- 16.10 훈련안전위원은 훈련안전이사의 추천으로 회장의 승인을 받은 자들로 구성한다
- 16.11 심판위원은 심판위원장의 추천으로 회장의 승인을 받은 자들로 구성한다.
- 16.12 자문위원은 자문위원장의 추천으로 회장의 승인을 받은 자들로 구성하며, 협회 유효회원 자격을 갖춘 자로서 나이, 성별, 강하경력에는 무관하며 협회 활동에 적극적이며 회원들의 의견을 효율적으로 수렴하여 개진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한다

16.13 임원 및 간부 중에 일정기간 활동에 참여하지 않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는 임원 및 간부는 임기 중이라도 회장이 그 직위를 해제할 수 있다.

16.13.1 모든 임원은 연간 개최되는 임시 및 정기 이사회에 절반 이상을 참여하여야 한다. 이를 어길 시, 자동 직위 해임에 처한다.

17. 임원 및 간부의 임무

17.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본회의 업무 전반을 관장한다

17.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에는 연장자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17.3 감사는 만일, 회장이 제11조 및 제15.2조의 조건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총회 및 이사회를 소집하지 않을 경우에는 감사가 총회 및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또한, 본회의 업무와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며 그 결과를 이사회와 총회에 보고한다.

17.4 사무이사는 대외업무의 창구이며, 협회 내부 업무로는 회원관리, 회계관리, 회보발행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사무업무를 주관한다.

17.5 훈련안전이사는 강하 활동을 주관하고 통제하며, 훈련안전위원회의 장이 된다.

17.6 심판위원장은 국내 스카이다이빙 대회 규정과 심판 기준의 제정을 주관하고 심판 양성을 위한 세미나의 실시와 심판관 자격 심사를 주관 한다.

17.7 일반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16.4항에 관련된 사항을 의결하고,

회장이 부여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17.8 자문위원장은 회원들의 다양한 건의 및 제안 사항들을 효율적으로 수렴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여 협회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한다.

17.9 훈련안전위원회는 신기술에 관한 기술 표준을 제정하고, 강하자 지침서와 낙하산 정비사 관리 규정의 수정보완, 각종 자격증의 적격여부 심사, 교육기관에 관한 자문 및 업무지도를 관장하며, 국제대회 참가선수 선발, 시범행사 참가자의 적격여부 심사, 강하자 자격 경고 및 정지 결정을 한다

17.10 지부장은 소속 지역회원의 대표로서, 지역회원의 의사를 파악하여 협회업무에 반영하고, 소속 지역의 스카이다이빙 활동의 발전을 위하여 자율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활동하나,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17.10.1 지부회는 사업계획을 수립한 후 사전에 사무국에 서면보고를 하고 승인을 득한 후에 활동을 추진한다.

17.10.2 지부회는 자율적인 계획수립과 활동을 하지만 스카이다이빙 활동 외의 다른 종목의 활동은 할 수 없다.

17.10.3 지부회는 사업계획으로 발생하는 수익은 스카이다이빙 발전을 위한 경비 외에는 지출할 수 없다.

17.10.4 지부장은 활동계획과 실적 및 경비지출내역을 행사 직후에 서면으로 사무국을 경유하여 회장에게 보고한다.

제 6 장 교육 및 강하 자격증발급

18. 교육

교육기관 개설 신청 및 자격요건에 관한 사항은 본회 관리규정에 준한다

19. 강하 자격증 발급

자격증 발급은 본 회의 `강하자 지침서` 및 `낙하산 정비사 관리 규정`의 내용에 따른다.

19.1 자격증의 종류

자격증은 강하자격증(Licence), 교관 자격증(Rating), 낙하산정비사 자격증(Rigger), 심판자격증으로 분류되며, 교관 자격증은 생명 줄 강하, 교관도움개방 강하, 2인승 강하와 속성 자유강하 교관으로, 낙하산정비사 자격증은 1,2급 낙하산정비사 자격증으로 세분한다.

19.1.1 강하자격증

19.1.1.1 A 등급 자격증; 초급 강하자격

19.1.1.2 B 등급 자격증; 중급 강하자격

19.1.1.3 C 등급 자격증; 상급 강하자격

19.1.1.4 D 등급 자격증; 고급 강하자격

19.7.2 교관자격증

19.7.2.1 교관 자격증 (Instructor)

19.7.2.2 교관/시험관 자격증 (Instructor / Examiner)

19.7.3 낙하산 정비사 자격증

19.7.3.1 낙하산 2급정비사 자격증

19.7.3.2 낙하산 1급정비사 자격증

19.7.4 심판관 자격증

19.8 강하 자격증 요구조건

19.8.1 A 등급 자격자

A급 자격자는 자신이 강하할 지점을 자신이 선택하여 강하할 수 있는 능력과 주 낙하산을 자신이 포장할 수 있는 능력, 대형 만들기 강하의 기본과 수상강하 기본 안전교육을 이수하고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 19.8.1.1 최소 25회 자유강하(Free fall) 기록을 가진 자로써, 40초 이상의 자율통제 된 강하 기록을 3회 이상 갖고, 5분 이상의 누적 자유강하시간 기록을 가진 자.
- 19.8.1.2 자신이 항공기에서 이탈하는 것과 낙하산을 펴는 지점을 결정하여 최소 5회 이상 착지점 중심 반경 20m 이내 착륙 기록을 가진 자.
- 19.8.1.3 교관으로부터 빠질 수 있는 물, 고압선 및 산림 지역에서 착지하는 방법을 교육 받은 자.
- 19.8.1.4 자유강하를 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방향을 바꿀 수 있으며, 좌. 우로 360도 수평회전(turn)을 할 수 있는 자.
- 19.8.1.5 주낙하산 포장능력을 가진 자.
- 19.8.1.6 대형 만들기 강하를 하면서, 안정되게 항공기 이탈을 할 수 있으며, 하강 속도 와 수평 이동 속도를 변화시킬 수 있으며, 2인조 대형 만들기 강하를 최소한 3회 이상 연습을 한 기록이 있으며, 낙하산 개방 시 다른 강하 자들과 충돌하지 않도록 주위를 확인하고 낙하산을 펴며, 다른 강하 자들과 충돌하지 않도록 멀리 떨어져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
- 19.8.1.7 본인 및 타인의 강하 전 장비점검 능력을 가진 자.
- 19.8.1.8 교관에 의한 A등급 자격증을 위한 필기시험에서 80% 이상 점수를 획득한 자.
- 19.8.1.9 워터트레이닝을 이수한 자.

19.8.2 B 등급 자격자

19.8.2.1 A 등급 자격자의 요구조건을 모두 만족한 자.

19.8.2.2 최소 50회의 자유강하 기록을 가진 자로써, 45초 이상의 자율통제 된 자유강하를 3회 이상 가진 자로써, 총 자유강하시간 기록이 30분 이상인 자.

19.8.2.3 최소 10회 이상 착지점 중심반경 10m 이내 착륙기록을 가진 자.

19.8.2.4 자유강하 시 15초 이내에 좌, 우 360도 수평 회전과 뒤로 제비돌기(loop), 우, 좌 360도 수평회전과 제비돌기를 할 수 있는 능력자.

19.8.2.5 자유강하 시 하강속도 조절 능력을 가진 자.

19.8.2.6 대형 만들기 기초안전사항 및 기본필수사항을 숙지하고, 또한 실기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자.

19.8.2.7 캐노피코스를 이수한 자.

19.8.3 C 등급 자격자

19.8.3.1 B 등급 자격증의 요구조건을 모두 만족한 자.

19.8.3.2 최소 200회 자유강하 기록을 가진 자로써, 45초 이상의 자율통제 된 자유강하를 10회 이상 실시 한 기록이 있고, 60분 이상의 누적 자유강하시간 기록을 가진 자.

19.8.3.3 최소 20회 이상 착지점 중심반경 5m 이내 착륙 기록을 가진 자.

19.8.3.4 자유강하 시 15초 이내에 좌, 우 360도 수평회전과 뒤로 제비돌기, 우, 좌 360도 수평회전과 뒤로 제비돌기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거나, 4인조 이상의 대형 만들기 강하에서 4점 이상을 할 수 있는 자.

19.8.4 D 등급 자격자

19.8.4.1 C 등급 자격증 신청 요구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19.8.4.2 최소 500회 이상 자유강하 기록을 가진 자로써, 60초 이상의 자율통제 된 자유강하를 10회 이상 실시하고, 3시간

이상의 누적 자유강하시간 기록을 가진 자

19.8.4.3 최소 25회 이상 착지점 중심반경 2m 이내 착륙 기록을 가진 자.

19.8.4.4 자유강하 시 18초 이내에 뒤로 제비돌기와 앞으로 제비돌기, 좌, 우 360도 수평회전과 우, 좌로 구르기(roll)를 순서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8인조 이상의 대형 만들기 강하에서 2점 이상을 할 수 있는 자.

19.8.4.5 최소 2회 이상의 야간강하 기록을 가진 자로써 그 중 1회 이상은 20초 이상의 자유강하를 한 자 혹은 야간 강하가 불가능할 경우, 시험관이 주관하는 야간강하 안전 교육을 이수한 자.

19.9 상기 A, B, C, D등급 자격증의 필기시험은 교관의 구술시험으로 필기시험을 면제 한다.

19.10 상기 A, B, C, D등급 자격증의 소지자는 일정기간 동안 강하를 지속하지 아니한 경우, 아래와 같은 처치를 밟아 강하 자격을 재취득한 후, 강하를 하여야 한다.

19.10.1 A 등급 소지자

19.10.1.1. 60일 이상 강하를 하지 않았을 경우 :

교관으로부터 지상교육을 받은 후 교관의 판단 하에 결정된 강하방식에따라 강하를 실시해야 한다.

19.10.2 B 등급 소지자

19.10.2.1 90일 이상 강하를 하지 않았을 경우 :

교관으로부터 지상교육을 받은 후 교관의 판단 하에 결정된 강하방식에따라 강하를 실시해야 한다.

19.10.3 C 등급 소지자.

19.10.3.1 180일 이상 강하를 하지 않았을 경우 :

교관으로부터 지상교육을 받은 후 교관의 판단 하에 결정된 강하방식에따라 강하를 실시해야 한다.

19.10.4 D 등급 소지자.

19.10.4.1 180일 이상 강하를 하지 않았을 경우 :

교관으로부터 지상교육을 받은 후 교관의 판단 하에 결정된 강하방식에 따라 강하를 실시해야 한다.

19.11 교관 자격 및 낙하산정비사 자격

19.11.1 교관의 의무; 교육생을 가르치는 교관은 안전하고 효과적인 교육을 시키기 위하여 교육 방법의 개선에 대하여 연구하며, 교육 관련 의 각종 세미나에 참가하여야 한다.

19.11.2 교관 및 낙하산정비사 자격의 일반사항

19.11.2.1 교관 및 낙하산정비사 자격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매년 갱신하여야 한다.

19.11.2.2 교관 및 낙하산정비사 자격은 협회 유효회원만이 취득할 수 있다.

19.11.2.3 자격갱신 기간이 경과된 교관 및 낙하산정비사는 해당 시험관 또는 훈련안전위원회가 주관하는 소정의 보충 교육을 받아야 한다.

19.11.2.4 교관 및 낙하산정비사 자격은 해당 시험관 또는, 훈련안전위원회의 건의에 의해 이사회에서 정지 또는 취소될 수 있으며, 시험관이 일정기간 활동에 참여하지 않거나, 불공정한 평가 및 직무를 태만히 하는 경우는 임기중이라도 회장이 그 직위를 해제 할 수 있다.

19.11.2.5 교관자격증은 일련번호가 없다. 따라서 서명 시에는 자신의 서명과 자격을 취득한 연도 및 월을 표시한다.

19.11.3 교육 방법 ; 교육생의 교육은 아래와 같이 세분되며 교육 방법에 따른 해당교관 자격은 본회의 강하자 지침서 9.7.2의 등급에 따라 자격이 부여된다.

19.11.3.1 생명줄 강하(Static Line).

19.11.3.2 교관도움개방 강하(Instructor Assisted Deployment)

19.11.3.3 2인승 강하(Tandem Jump).

19.11.3.4 속성자유강하(Accelerated Free Falls).

19.12 시험관 임명자격의 요구조건

협회장이 시험관을 임명할 때는 9.12 교관 자격증관리규정 및 낙하산정비사 관리규정에 의하고, 아래의 요구조건 항목을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 다만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시험관을 부득이 임명해야할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

19.12.1 협회 강하지침에 따른 교관을 가르치고 감독하며, 숙달 교육과 강하를 시킬 수 있는 자.

19.12.2 고공강하, 응급처치, 낙하산 포장과 낙하산 또는 강하 장비 수선에 관한 어떠한 질문에도 답변할 수 있는 자.

19.12.3 협회 강하지침에 따른 야간강하, 수상강하, 시범강하와 기타 강하를 지도할 수 있으며, 야간강하, 수상 강하와 사전 계획된 주 낙하산 분리 강하를 진행한 자.

19.12.4 협회의 모든 등급별 강하자격, 각종 교관 자격의 응시 기준과 평가기준을 전부 숙지하고 있으며, 등급별 자격자에게 교육시키는 방법을 전부 숙지하고 있는 자.

19.12.5 개정되는 등급별 자격 요구조건을 숙지하고 있는 자.

19.12.6 시험관의 모든 사고에 대한 연구가 협회의 의견과 동일한 자.

19.12.7 기본 안전 수칙

19.12.8 스카이다이빙 일반

19.12.9 대한민국 항공법규

19.12.10 스카이다이빙 역사

19.12.11 응급처치

19.12.12 협회 정관 및 관련규정

19.12.13 낙하산 정비와 구조학

19.12.14 교육방법

19.13 교관자격증 및 낙하산정비사 관리규정

19.13.1 생명줄 강하 또는 교관도움 개방 강하 교관

19.13.1.1 D등급 강하 자격증 소지자.

19.13.1.2 교육생이 A 등급 자격을 취득하도록 하기 위한 이론과 기술을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

19.13.1.3 시험관의 주관 하에 생명줄 강하 또는 교관도움 개방 강하 교관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평가시험을 통과한 자

19.13.2 생명줄 강하 또는 교관도움강하 시험관

19.13.2.1 생명줄 강하 또는 교관도움강하 교관 자격증을 취득한지 1년이 경과된 자로서 100명 이상의 교육 수료 경험을 가진 자.

19.13.2.2 9.11 및 9.12항의 시험관 요구조건을 충족하는 자로써 협회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이며, 재임할 수 있다.

19.13.3 2인승강하 교관

19.13.3.1 D등급 강하 자격자.

19.13.3.2 500회 이상 사각 낙하산으로 강하한 자.

19.13.3.3 최근 12개월 동안에 20회 이상 사각 낙하산으로 강하한 자.

19.13.3.4 총 자유강하시간이 4시간 이상인 자.

19.13.3.5 실제 주낙하산을 분리하고 예비낙하산을 개방한 경험이 있는 자 또는 강하주관자 주관 하에 특수 제작된 낙하산으로 주낙하산 분리 예비낙하산 개방 훈련을 받은자.

19.13.3.6 2인승강하 시험관의 주관 하에 2인승강하 교관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평가시험을 통과한 자.

19.13.3.7 2인승강하 시험관이 주관하는 실기 2인승강하를 10회 (교육생 위치에서 최소 1회 이상, 시험관이 교육생 위치에서 최소 4회 이상, B등급이상 자격자를 교육생 위치에서 최소 5회 이상)이상 실습한 자.

19.13.4 2인승강하 시험관

19.13.4.1 2인승 강하 교관 자격을 취득한지 1년 이상 경과된 자.

19.13.4.2 100회 이상의 2인승강하 경험을 가진 자.

19.13.4.3 9.12 및 9.13항의 시험관 자격을 충족하는 자로서 협회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이며, 재임할 수 있다.

19.13.5 속성자유강하 교관

19.13.5.1 D등급 강하 자격자.

19.13.5.2 500회 이상 사각 낙하산으로 강하한 자.

19.13.5.3 최근 12개월 동안에 20회 이상 사각 낙하산으로 강하한 자.

19.13.5.4 속성자유강하 교육의 이론적으로나 실기 면에서 교육생에게 교육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

19.13.5.5 교육생이 A급 자격을 취득하도록 지도 및 감독할 능력이 있는 자.

19.13.5.6 속성자유강하 시험관 주관 하에 속성자유강하 교관 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평가 시험을 통과한 자.

19.13.5.7 속성자유강하 교관은 시험관의 추천에 의해 교관평가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19.13.6 속성자유강하 시험관

19.13.6.1 속성자유강하 교관 자격을 취득한지 1년 이상 경과된 자로서 200회 이상의 교육 강하 경험을 가진 자.

19.13.6.2 9.12 및 9.13항의 시험관 요구조건을 충족하는 자로서 협회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이며, 재임할 수 있다.

19.13.6.3 속성자유강하 교관평가과정에 3회 이상 평가 관으로 참가한 경험이 있는 자.

19.13.7 낙하산정비사

19.13.7.1 협회의 낙하산정비사 관리규정에 의한다.

19.14 교관 및 낙하산정비사 자격 갱신의 요구조건

19.14.1 공통사항

- 19.14.1.1 협회의 교관 및 낙하산정비사 자격 갱신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무국에 제출한다. 사무국은 서류 검토후 해당분과에서 심사를 받아 자격증을 갱신한다.

19.14.2 생명줄 강하 또는 교관 도움개방강하 교관자격 갱신

- 19.14.2.1 교관 자격갱신 요구조건에 충족하며, 교육생의 첫 강하 과정을 복습한 자
- 19.14.2.2 12개월 동안 1명 이상의 교육생을 첫 자유강하 때까지 훈련시키고 교관 역할을 한 자.
- 19.14.2.3 12개월동안 최소 15번의 교육생 점프를 진행한 자.
- 19.14.2.4 12개월동안 최소 1번의 교관 세미나에 참석한 자.

9.14.3 2인승 강하 교관자격 갱신

- 19.14.3.1 12개월 동안 15회 이상 2인승 강하를 실시한 자.
- 19.14.3.2 최근 6개월 동안 2인승 강하를 미실시한 교관은 교육생 강하를 하기 전에 최소 1회 이상의 강하 자격증 소지자를 교육생으로 하여 숙달강하를 해야 한다.
- 19.14.3.3 교관 세미나에 참가한 기록이 있는 자.

19.14.4 속성자유강하 자격갱신

- 19.14.4.1 12개월 동안 10회 이상 교육생 강하를 실시한 자.
- 19.14.4.2 교관 세미나에 참가한 기록이 있는 자.

19.14.5 낙하산정비사 자격갱신

- 19.14.5.1 협회의 낙하산정비사 관리규정에 따른다.

19.15 일정기간 이상 활동하지 않은 교관은 시험관의 감독하에 아래와 같은 평가를 받아야 자격이 갱신될 수 있다.

19.15.1 2인승 강하교관

- 19.15.1.1 90일 이상 활동하지 않은 경우;

200회 이상의 강하 횟수를 지닌 강하 자격증 소지자를
교육생으로 하여 최소 1회의 숙달 강하를 해야 한다.

19.15.1.2 180일 이상 활동하지 않은 경우;

시험관으로부터 지상훈련을 받은 후, 솔로 2인승 강하를
실시하고 시험관 감독하에 강하 자격증 소지자를 교육생
으로 하여 숙달강하를 해야 한다.

19.15.1.1 1년 이상 활동하지 않은 경우;

처음부터 재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19.15.2 속성자유강하 교관

9.15.2.1 1년 이상 활동하지 않은 경우;

시험관으로부터 이론교육및 지상훈련을 받은 후 시험관
감독하의 최소 한번의 교관 강하를 실시해야 한다. 또한,
속성자유강하 교관 자격 필기 시험을 재응시해야 하며, 최소
1번의 교관 세미나에 참석해야 한다.

19.15.3 낙하산정비사

19.15.3.1 협회의 낙하산정비사 관리규정에 의한다.

19.15.4 2인승 강하 카메라맨

19.15.4.1 2인승 강하에서의 카메라 촬영 강하는 별도의 자격증
없이 D등급이상의 강하 자격자 그리고 코치 및 속성강하
혹은 2인승 강하 교관 자격증 소지자에 한하여 수행
가능하다.

제 7 장 자산 및 회계

20. 자산의 구분

본 회의 자산은 입회비, 회비, 기부금, 찬조금, 자격증 등록비, 국고 보조금 및 사업 수익금과 이로써 조성된 장비, 시설 및 비품 등으로 구성된다.

21. 회계 년도

본 회의 회계 년도는 정부 회계 년도에 준 한다.

22. 자산의 처분

필요에 의하여 자산의 처분이 요구될 때에는 기본자산은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보통자산은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처분하고, 국고 보조금으로 구성된 자산은 주무장관의 승인을 득하여 처분한다.

제 8 장 부 칙

23. 부칙

23.1 본 정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및 협회 운영세부규칙은 ‘관리규정’ 과 ‘강하자 지침서’ 및 ‘낙하산 정비사 관리 규정’의 내용에 따른다.

23.2 정관에서 목적인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정 및 지시는 이사회에서 제정하며, 본 정관에서 정하여지지 않은 사항은 민법, 기타 관계법규 및 관례에 따른다.

24. 시행

본 정관은 2019년 01월 07일부터 시행한다

